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3/2567호

포괄적인 사업 이전 촉진 방안

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의 내용에 이어, 투자위원회는 제조설비,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촉진법 제16조, 18조 및 31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

1. 신규 투자로 투자촉진을 신청하는 제조업 프로젝트

1.1 투자 촉진 신청자가 같은 법인으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조건

- (1) 투자촉진 신청서는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제조업에 대한 투자촉진 신청서와 국제비즈니스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투자청에서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한 활동은 예외로 한다.
- (3) 투자 촉진 수락과 촉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4) 국제비즈니스센터(IBC) 및/또는 R&D 센터는 투자촉진증(Investment Promotion Certification)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첫번째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는 취소된다.
- (5) 지원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지역 본부 및/또는 연구개발(R&D)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6) R&D 센터에 투자하는 경우, R&D 센터로서의 필수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혜택

- (1) 국제비즈니스센터(IBC)와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3년 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국제 비즈니스 센터 및 R&D 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 촉진을 신청하는 제조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추가로 5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조세 혜택

1.2 투자촉진 신청자가 계열사의 다른 법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조건

- (1) 본 방안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 (2) 제조업에 대한 투자촉진 신청서와 국제비즈니스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투자청에서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한 활동은 예외로 한다.
- (3) 투자 촉진 수락과 촉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4) 국제비즈니스 센터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4.1) '국제 비즈니스 센터' 활동으로 투자촉진을 신청하는 신규 프로젝트여야 한다.
투자는 신규 또는 기존 법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방안에 따라 제조 활동으로 투자 촉진을 받은 기업과 같은 계열사여야 한다.
 - (4.2)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는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9/2565호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기계 수입과 완전 조업에 대한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는다. 완전조업개시 요청은 투자청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포괄적인 사업 이전 방안에 따른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 (4.3) 신청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조건에 따라 지역 본부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5) 제조 프로젝트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5.1) A그룹에 속한 업종으로 투자 촉진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신규여야만 한다. 단, 투자청에서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은 예외로 한다.
 - (5.2)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 활동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5.3) R&D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다음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 R&D 센터로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R&D 센터는 투자촉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 매출 발생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포괄적인 사업 이전 방안에 따른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R&D 센터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 센터로서의 필수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5.4)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투자 확인서 및/또는 R&D 센터의 첫 매출 발생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추가혜택

- (1) 국제비즈니스센터(IBC)와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2) 국제비즈니스센터(IBC)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A 그룹에 속한 업종으로 기존에 투자 촉진을 받고 있는 제조 프로젝트. 단, 투자청이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은 예외로 한다.

2.1 투자 촉진 신청자가 같은 법인으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조건

- (1) 신청서는 2024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신청자는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운영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BC 활동 범위 확장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일 당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과 면제 금액 한도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한다.
- (3) 국제비즈니스센터(IBC) 및/또는 R&D 센터는 사업 수정 승인일로부터 1년 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첫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기본 규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케이스에 따라 3년 또는 5년 간의 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은 취소된다.
- (4)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지역본부 및/또는 R&D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5) R&D 센터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개발 센터로서의 필수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추가 혜택

- (1)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와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2)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2 투자촉진 신청자가 계열사의 다른 법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조건

- (1)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투자 촉진 신청서는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9/2565호에 따라 2024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국제 비즈니스 센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1) 국제 비즈니스 센터' 활동으로 투자촉진을 신청하는 신규 프로젝트여야 한다.
투자는 신규 또는 같은 법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방안에 따라 제조 활동으로 투자 촉진을 받은 기업과 같은 계열사여야 한다.
 - (2.2) 투자촉진 수락과 촉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기계 수입과 완전 조업에 대한 기한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완전조업 개시 요청은 투자청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경우, 포괄적인 사업 이전 방안에 따른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 (2.3) 신청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조건에 따라 지역 본부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3) 제조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3.1) R&D 센터에 투자를 한 경우, 다음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 R&D 센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정서는 기존의 제조 프로젝트가 매출을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비즈니스 센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일 당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과 면제 금액 한도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한다.
 - R&D 센터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개발 센터로서의 필수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투자청이 승인한 바에 따라 R&D 센터의 본질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 수정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기본 규정에 따른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2)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국제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투자 확인서 및/또는 R&D 센터의 첫 매출 발생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추가혜택

- (1)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와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2)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함께 투자촉진을 신청한 제조 활동 프로젝트는 제조 활동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활동 기준에 따른 기본 혜택에 추가로 부여되지만, 총 면제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3. 본 방안에 따라 모든 규모의 프로젝트에 추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와 적절한 추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실제 투자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고려할 권한을 투자청에 위임한다.

본 고시문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4년 2월 7일

뽀뽀리 파히타누껀(Parnpree Bahiddha-Nuka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